



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 계약체결 등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

산자부고시 제2001-80호, '2001.7.5

산자부는 지난 7월 5일 LPG안전대책 시범실시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
기한다는 내용의 특례기준을 개정고시했다.

종 전	개 정 후
<p>제7조(시범지역의 가스공급) 시범지역내에 있는 소비자에 대한 가스공급(제4조제1항의 안전공급계약체결 및 서면계약서 교부)은 시범지역내의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에 한해 할 수 있다. <u>다만, 부칙 제3조의 기한까지 시범지역외의 판매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 소비자가 계약의 지속을 희망하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	<p>제7조(시범지역의 가스공급) 시범지역내에 있는 소비자에 대한 가스공급(제4조제1항의 안전공급계약체결 및 서면계약서 교부)은 시범지역내의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에 한해 할 수 있다. <단서 삭제></p>

종 전	개 정 후
<p>별표1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중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</p> <p>제2호 【당사(점)의 안전책임】 (1) 고객이 가스를 사용할 경우 당사(점)가 유지관리하는 공급설비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<u>재해에 대해서는 당사(점)가 책임을 지며, 다만,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(2) 당사(점)가 행하는 소비설비의 점검하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<u>당사(점)가 책임을 집니다. 다만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	<p>별표1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서중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</p> <p>제2호 【당사(점)의 안전책임】 (1) 고객이 가스를 사용할 경우 당사(점)가 유지관리하는 공급설비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<u>당사(점)가 책임을 지며, 이를 위해 당사(점)는 소비자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(2) 당사(점)가 행하는 소비설비의 점검하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<u>당사(점)가 책임을 지며, 이를 위해 당사(점)는 소비자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 다만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u></p>
<p><u>별표1에 <별지 신설></u></p>	<p>별표1 <별지>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</p> <p><u>귀하께 가스를 공급하는 당사는 가스사고를 대비하여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, 당사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한 고객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</u></p> <p><u>만약, 가스사용중 불의의 가스사고로 피해발생시에는 사망(후유장애 포함)의 경우 1인당 8천만원, 부상의 경우 1인당 1천5백만원,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 범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다만,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계약서상의 기본적 준수사항 위반과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</u></p> <p>붙 임 : 보험증서 사본 공급자명 : ○○○가스 대표자 : ○○○(인)</p>

종 전	개 정 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부 칙 〉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<u>2001년 1월 10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시행기간) 이 고시는 <u>2001년 6월 30일</u> 까지 시행한다.</p> <p>제3조(안전공급계약체결) 판매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<u>30일 이내</u>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보험가입) 이 고시 시행당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판매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<u>30일 이내</u>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부 칙 〉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<u>고시한 날부터</u>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시행기간) 이 고시는 <u>2001년 12월 31일</u> 까지 시행한다.</p> <p>제3조(시범지역 가스공급에 관한 적용제외) 이 고시 시행전에 산업자원부고시에 의하여 시범지역내의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시범지역외의 판매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가 계약의 지속을 희망하는 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보험가입확인서 전달) 이 고시 시행전에 산업자원부고시에 의하여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판매사업자도 소비자보장책임 보험가입확인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</p>